

# 환경정보 공개제도 개요

2021. 4. 16.



환경정보공개시스템  
ENV-INFO SYSTEM

# 목 차

- 1 제도 개요 >
- 2 법 개정사항 >
- 3 환경정보 작성 방법 >
- 4 향후 추진 일정 >

# 1. 제도 개요

**[추진목적]**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기업의 자발적 환경경영 추진의지를 제고

이해관계자와의 환경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여 **사회 전반의 녹색경영 기반 조성**

**[법적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환경정보의 작성·공개), 제16조의9(환경정보의 검증)

-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 규정

**[추진체계]**



# 1. 제도 개요

**[공개대상]** '20년도 법인 기준 1,683개사 (3,543개 사업장)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공립대학,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업체, 배출권할당 대상업체, 녹색기업
- '22년부터 연결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 추가됨

**[공개항목]** 녹색경영체계, 자원·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환경오염 물질 배출량, 녹색 제품·서비스 등 (기타서비스 기준 19개(의무 6개, 자율 13개))

**[분야별 공개 항목 현황]**

구분	제조	공공행정	보건	교육서비스	기타서비스	기타산업
항목수(개)	27	19	19	19	19	27
의무항목(개)	13	8	7	6	6	13
자율항목(개)	14	11	12	13	13	14

\* 분야별 업종은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별표1] 참고

\* 지주회사, 증권 증개업, 손해 보험업 등 금융 및 보험업, 도소매업은 기타서비스 유형에 해당함

**[공개방법]** 대국민 공개(매년 12월 말, 환경정보검증·공개시스템 [www.env-info.kr](http://www.env-info.kr))

# 1. 제도 개요

## ● [주요추진 경과]



# 1. 제도 개요

## [세부 공개 항목] - 기타서비스 분야 기준

구분	공개 항목	항목	주요 내용
기업 개요	<b>사업현황</b>	<b>의무</b>	<b>매출액, 종업원수, 소속 사업장 현황 등</b>
	환경관련 수상 및 협약 현황	자율	환경관련 수상, 인증, 협약 등
녹색경영 시스템	비전, 전략, 방침, 목표	자율	녹색경영 비전·전략, 목표 및 계획
	<b>전담조직, 교육훈련, 내부심사 등</b>	<b>의무</b>	<b>녹색경영 관련 전담 조직, 교육훈련, 내부심사, 환경안전사고 관련 대응체계 및 훈련 등</b>
자원/에너지	<b>용수 사용량, 재활용량</b>	<b>의무</b>	<b>용수(상수, 지하수, 하천수 등) 사용량 및 재활용 실적</b>
	<b>에너지 사용량</b>	<b>의무</b>	<b>온실가스목표관리제도 기준으로 에너지원별 사용량을 입력하고 에너지 총량(TOE단위) 공개</b>
	신재생에너지 투자 및 기술도입	자율	신재생 에너지 개발·적용 및 도입, 환경친화적 에너지 개발 등의 투자 및 기술도입 실적
온실가스·환경오염	온실가스 저감투자 및 기술도입	자율	생산공정에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설비 교체, 고효율 설비 및 공정 개선 등 실적
	온실가스 관리수준 및 배출량	자율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 온실가스 배출량 등
	환경오염 저감투자 및 기술도입	자율	대기·수질, 폐기물, 화학물질, 악취와 관련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기술투자 및 도입 실적
	환경오염관리시설 및 모니터링 시스템 현황	자율	대기·수질·화학물질 등의 환경오염물질 관리시설 현황 및 처리능력, 모니터링 운영 현황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율	NOx, SOx, PM 발생량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자율	BOD, COD, SS, T-N, T-P 발생량
	<b>폐기물 발생량, 재활용량</b>	<b>의무</b>	<b>일반·지정·건설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량</b>
	화학물질 배출량	자율	화학물질 배출량
녹색제품·서비스	녹색구매 지침 운영 현황	자율	녹색제품(환경마크, GR마크 등) 구매관련 지침 및 운영 실적
사회·윤리적 책임	<b>국내외 환경법규 위반 현황</b>	<b>의무</b>	<b>환경사고 발생, 민원발생 및 대응, 배출부과금 체납, 환경관련법규 위반 등 실적</b>
	환경(지속가능)보고서 발간 현황	자율	기업의 환경관리 활동 및 성과 등이 포함된 환경보고서 또는 지속가능보고서
	이해관계자 환경정보 요청 대응현황	자율	환경관련 이해관계자 요청 및 대응 현황

# 1. 제도 개요

[활용] 금융 투자기관(국민연금, 기업지배구조원, 네이버 등)의 ESG 평가 및 환경책임투자, 기업의 환경전략 수립, 학술연구 기초 자료 등으로 활용

● 모바일(네이버) 환경에서 환경정보 공개 사례(코스피 200 만 공개 중)

The screenshots illustrate the integration of ESG data into the Naver mobile app's financial reporting interface. Key elements include:

- Navigation:** The '비재무정보' (Non-Financial Information) tab is highlighted in the first screenshot.
- Definition:** The second screenshot defines Non-Financial Information as data that is not covered by financial statements but is essential for understanding the company's long-term value and risks.
- ESG Metrics:** The third screenshot displays specific environmental metrics such as greenhouse gas emissions (5.3 tCO<sub>2</sub>/100 million KRW), energy usage (1.9256 TOE/100 million KRW), and water usage (46.5 ton/100 million KRW).

# 1. 제도 개요

[활용] ● 국민연금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고려한 투자('20년도) 지표

구분	ESG 이슈	정의	평가 지표	구분	ESG 이슈	정의	평가 지표
환경 (E)	기후변화	탄소배출 관리 수준	온실가스관리시스템 탄소배출량 에너지소비량	지배구조 (G)	주주의 권리	주주권리 보호 및 소통 노력 수준	경영권 보호장치 주주의권 수렴장치 주주총회 공시시기
	청정생산	환경유해물질 배출 관리 수준	청정생산관리시스템 용수사용량 화학물질 사용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폐기물 배출량		이사회 구성과 활동	이사의 독립성 및 충실성 수준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이사회 구조의 독립성 이사의 사외이사 구성 현황 이사회 활동 보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이사보수 정책 적정성
	친환경 제품 개발	환경 친화적 제품 개발 노력 수준	친환경제품 개발 활동 친환경 특허 친환경 제품 인증 제품 환경성 개선		감사제도	감사의 독립성 수준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비율 장기 재직 감사 또는 감사위원 비중 감사용역 비용 대비 비감사용역 비용
사회 (S)	인적자원관리 및 인권	근로환경과 인권 및 다양성 관리 수준	급여 복리후생비 고용 조직문화 근속연수 인권 노동관행	관계사 위험	관계사 부실로 인한 위험성 수준	순자산 대비 관계사 우발채무 비중 관계사 매출 거래 비중 관계사 매입 거래 비중	
	산업안전	작업장 내 안전성 관리 수준	보건안전시스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외부 인증 산재다발지역 지정	배당	배당 등 주주가치 환원 노력 수준	총주주수익률 최근 3년 내 배당 지급 과소 배당	
	하도급 거래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력 업체 관리 수준	거래대상선정 프로세스 공정거래기준 준수 프로그램 협력업체 지원 활동 하도급금 유한 처리				
	제품 안전	제품 안전성 관리 수준	제품안전시스템 제품안전경영시스템 인증 제품안전사고 발생				
	공정경쟁 및 사회발전	공정경쟁 및 사회발전 노력 수준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공정경쟁 저해 행위 정보보호시스템 기부금				

환경정보공개제도와 관련된 지표

# 2. 법 개정 사항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21.4.13) 시행('21.10.14)

기 존	개 정
<p><b>제16조의8(환경정보의 작성·공개)</b> ① 제16조의2에 따른 녹색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b>환경영향이 큰 기업</b>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환경정보를 작성·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환경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환경보호, 자원절약,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의 관리(이하 이 조에서 "환경관리"라 한다)를 위한 목표 및 주요활동 계획</li> <li>2. 환경관리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활용에 관한 사항</li> <li>3. 환경관리 성과에 관한 사항</li> </ol> <p>② 제1항에 따른 환경정보의 공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lt;신 설&gt;</p>	<p><b>제16조의8(환경정보의 작성·공개)</b>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환경정보를 작성·공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6조의2에 따른 녹색기업</li> <li>2. <b>「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중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기업</b></li> <li>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li> </ol> <p>② 제1항에 따라 작성·공개하여야 하는 환경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환경정보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환경보호, 자원절약,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의 관리(이하 이 조에서 "환경관리"라 한다)를 위한 목표 및 주요활동 계획</li> <li>2. 환경관리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활용에 관한 사항</li> <li>3. 환경관리 성과에 관한 사항</li> <li>4. <b>「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녹색경영에 관한 사항</b></li> </ol>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의 공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 2. 법 개정 사항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기 존	개정(안)
<p><b>제22조의9(환경정보의 공개 대상)</b> 법 제16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b>중앙행정기관</b></p> <p>2.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b>지방자치단체</b></p> <p>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b>기타공공기관</b>으로서 직원의 정원이 100명 미만인 기관은 제외한다)</p> <p>4.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b>국립대학 및 공립대학</b></p> <p>5. 시·도지사가 설립한 다음 각 목의 기관</p> <p>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b>지방공사</b>(직원의 정원이 50명 미만인 지방공사는 제외한다)</p> <p>나.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b>지방공단</b>(직원의 정원이 50명 미만인 지방공단은 제외한다)</p> <p>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b>지방의료원</b>(직원의 정원이 300명 미만인 지방의료원은 제외한다)</p> <p>7.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b>관리업체</b> 또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b>배출권 할당 대상업체</b></p> <p>&lt;신 설&gt;</p>	<p><b>제22조의13(환경정보의 공개 대상)</b>① 법 제16조의8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7. (생략)</p> <p>8. <b>최근 사업 연도말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b></p> <p>② 제1항에 따른 환경정보 공개대상의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시행령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보완 예정

## 2. 법 개정 사항

### ● [참고]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 중 신규 환경정보 공개대상('20년말 기준)

번호	기업명	번호	기업명	번호	기업명
1	AK홀딩스	35	동양생명	69	유안타증권
2	BGF리테일	36	동원산업	70	유진증권
3	BNK금융지주	37	두산밥캣	71	이노션
4	CJ	38	롯데손해보험	72	제일기획
5	DB금융투자	39	롯데지주	73	제주은행
6	DB손해보험	40	롯데하이마트	74	카카오
7	DGB금융지주	41	메리츠금융지주	75	코리안리
8	E1	42	메리츠증권	76	코오롱
9	GS	43	메리츠화재	77	코오롱글로벌
10	GS리테일	44	미래에셋대우	78	코웨이
11	HDC	45	미래에셋생명	79	키움증권
12	HDC현대산업개발	46	삼성엔지니어링	80	태영건설
13	HMM	47	삼성증권	81	티와이홀딩스
14	JB금융지주	48	삼성카드	82	팬오션
15	KB금융	49	삼성화재해상보험	83	하나금융지주
16	KTB투자증권	50	삼양홀딩스	84	하이트진로홀딩스
17	LF	51	서연	85	한국금융지주
18	LG	52	세아제강지주	86	한국콜마
19	LG상사	53	세아홀딩스	87	한국테크놀로지그룹
20	LS	54	신영증권	88	한일홀딩스
21	NH투자증권	55	신한지주	89	한진중공업
22	NICE	56	아모레퍼시픽	90	한진칼
23	S&T홀딩스	57	아모레퍼시픽그룹	91	한화생명
24	SK	58	아세아	92	한화손해보험
25	SK디스커버리	59	아이에스동서	93	한화투자증권
26	SK증권	60	아주캐피탈	94	현대그린푸드
27	계룡건설산업	61	에스케이엔터카	95	현대엘리베이터
28	교보증권	62	엔씨소프트	96	현대중공업지주
29	넷마블	63	엔에이치엔	97	현대차증권
30	녹십자홀딩스	64	영원무역	98	현대해상
31	다우기술	65	영원무역홀딩스	99	현대홈쇼핑
32	대상홀딩스	66	오리온홀딩스	100	휠라홀딩스
33	대신증권	67	우리금융지주	101	흥국화재
34	대한해운	68	우리증권		

# 3. 환경정보 작성 방법

## ● [환경정보공개·검증 시스템 소개(www.env-info.kr)]

**환경정보공개시스템 ENV-INFO SYSTEM**

제도안내    환경정보공개    정보마당    소통마당

로그인    검색

**공지사항**

환경정보 공개제도란    환경정보통계    우수참여기업·기관    지침 가이드라인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찾기

**회원가입**    로그인

**공지사항**    제안하기

- 환경부 금융위원회 '한국형 녹색채권 안내서' 발간
- ★★2020년 환경정보 추가 공개대상 안내 및...
- ★ 환경정보 등록지원 실무교육(1:1 맞춤형 / 현...
- 2020년 환경정보공개 대상기관 확정(20.6.26...
- 2020년 환경정보공개 대상기관 확인 및 환경경...
- 「2020년 환경정보공개 대상(大賞)참여 기업...

**기업·기관 정보검색**

기업 및 기관명을 입력해주세요

검색

**2018 환경정보 공개보고서 발간**

다운로드 >

**공개된 환경정보 검색**

**교육 신청**

본 시스템 사용방법, 환경정보 등록방법 등 환경정보 등록 실무자 대상 교육을 신청하세요

신청하기 >

자주묻는 질문

**헬프데스크**

기관문의 : 02) 6951-5536/5538  
기업문의 : 02) 2284-1980  
평일 09:00 ~ 18:00

**연도별**

유형별 ▶  
특성별  
지역별

연도	공공행정	교육서비스	기타산업	기타서비스	보건	제조
2018	6,338					
2019						3,543

# 3. 환경정보 작성 방법

## [작성원칙]

- **조직경계 기준을 명확히**

- (정의) **업체의 지배적인 영향력** 아래 발생하는 활동에 의한 **환경정보의 산정 및 보고 기준**이 되는 조직 범위(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참조)  
=> 환경영향이 큰 기업으로 지정되지 않은 주권상장법인은 '22년에는 **대표사업장(본사)의 정보만 입력**

- **정량정보 항목에 대해선 증빙자료 첨부 필수**

- (예) 생산량 및 원부자재 - ERP자료, 매출액 - 손익계산서, 종업원수 - 직원관리대장  
용수 - 고지서 또는 관리대장, 에너지 및 온실가스 - 온실가스 명세서, 전기요금 고지서 등  
수질 - 폐수배출업소조사표, 대기 - 대기배출원시스템(SEMS) 자료,  
폐기물 - 올바로시스템 자료, 화학물질 - PRTR 보고서 등

\* 서류검증시 증빙자료 **미첨부된 항목**에 대해선 **보완 판정** 예정

# 3. 환경정보 작성 방법

## [의무항목 중심 항목별 작성 근거자료-기타서비스 기준]

구분		항목별 작성 근거자료
기업개요(사업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출액) DART/CRETOP 사이트 내 재무제표 매출액 등 회계자료</li> <li>◦ (종업원수) 1년 이상 근무한 정규직, 비정규직, 상주 협력업체 직원수 증빙자료</li> </ul>
전략 및 녹색경영시스템 (전담조직·교육훈련·내부심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색경영 조직도) 녹색경영 전담 조직도 및 업무내용(환경정보공개 전담 조직도)</li> <li>◦ (녹색경영 교육) 기업기관의 환경성과 향상을 위한 법적, 자발적 교육 등</li> <li>◦ (녹색경영 내부심사) 녹색경영 목표 달성 여부 등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하기 위한 내부심사</li> <li>◦ (환경안전사고대응체계) 소방 및 재난안전관리 조직도, 자위소방대, 비상연락망 등</li> <li>◦ (환경안전사고 대응 모의훈련) 사업장 내 환경 또는 안전사고 발생을 대비하기위한 훈련</li> </ul>
자원/에너지	용수 사용량	◦ 연간 상하수도 고지서, 자체 계측기록부 등
	에너지 사용량	◦ 온실가스 명세서, 이행결과보고서, 전기요금 고지서, 연료구매영수증, 차량대장 등 사용한 에너지에 대한 증빙자료
온실가스/ 환경오염	폐기물 배출량	◦ Allbaro 시스템 실적 보고 자료, 위탁처리업체의 폐기물 반출 자료, 종량제 봉투 구매 및 관리대장 등
사회/ 윤리적책임	환경법규 위반현황	◦ 법규 등록부, 환경법규 위반 확인서, 환경지도 점검 결과 보고서, 환경관련 민원/사고/배출부과금 체납 실적 등

**작성 기준년도의 정보를 기재함('22년에 입력하는 정보 기준은 '21년임)**

**구체적인 작성 매뉴얼 '22년 제공 예정**

# 3. 환경정보 작성 방법

## ● [주요 검증 기준]

주요 검증 내용		확인 사항
적정성	의무항목 누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무항목 누락 및 미작성 사유 확인</li> </ul>
	항목 정의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항목별 작성 내용, 단위 등 적정여부 확인</li> </ul>
일관성	등록정보 간 상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호연관성이 큰 정보에 대한 적정 증감여부 확인 (예) 생산량/매출액, 생산량/주원료/용수/에너지, 용수/수질 오염물질, 에너지/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 배출량, 생산량/폐기물발생량, 생산량/화학물질배출량 등</li> <li>소속 사업장 간 원단위 데이터 비교 (예) 기관 : 인원수 원단위/기업 : 생산량 원단위 * 기업의 소속사업장 원단위 비교를 위해서는 소속 사업장 간 생산량, 주원료사용량의 단위 일치 여부 확인 필요</li> <li>유사 분야 기업 기관 간 데이터 비교 (예) 동일 업종 내, 에너지 사용량 원단위 격차가 큰 경우</li> </ul>
신뢰성	내부문서와의 일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정보의 내부문서 등 출처 확인 (예) 정량정보의 경우 집계자료 중심으로 내부문서 확인, 정성정보의 경우 결과보고서 확인</li> </ul>
	산출과정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오염물질(대기/수질/폐기물/화학물질) 배출량, 용수·에너지 사용량 등 산출 과정 타당성 확인</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류검증 과정을 통해 미확인된 사항 관련 근거자료 확보 및 검토·확인</li> </ul>

## 4. 향후 추진 일정

'22년  
2/4 분기

- 환경정보 공개대상 범위 공고(시스템)
- 환경정보 공개 등록지원 실습교육
  - 거점별 집합교육 : 6월 / 1:1맞춤형 교육, 현장 맞춤형 교육 : 7월~12월 상시 운영
- '21년도 환경정보 등록 완료 : ~6월말

3/4 분기

- 환경정보 서류평가 실시(전수) : 7~12월
- 환경정보 표본 현장확인 실시(주권상장법인은 전수) : 8~11월
- 환경정보 비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 9~10월

4/4 분기

- '21년 환경정보 대국민 공개 : 12월말

## 참고. 자주 묻는 질문(Q&A)

**Q.** 회원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A.** 환경정보공개검증시스템(<https://www.env-info.kr>) 에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되고, 현재 법인 당 하나의 아이디 부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보 공개대상인 경우에만** 가입승인이 되니, '22년 4월 환경정보 공개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신 후 **회원가입**하시면 됩니다.

세부사항은 환경정보검증센터(02-2284-198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자주 묻는 질문(Q&A)

**Q.** 환경정보 공개 불이행시 불이익이 있나요?

**A.**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7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위반
법제16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법제37조제1항제1호	200	250	300
법제16조의9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의 수정요청에도 불구하고 환경정보를 수정하지 않는 경우	법제37조제1항제2호	200	250	300

# 참고. 자주 묻는 질문(Q&A)

**Q.** 임차한 건물의 정량정보(전기/용수/에너지 등)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A.** 고지서 및 계측기 등을 활용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 수도요금 고지서 등을 받는 경우,  
해당년도 월별 고지서의 사용량을 합산하여 연간 용수/에너지 사용량 정보 등록
- 계측기를 활용하여 개별 기업.기관의 용수/에너지 등의 사용량을 산정
- 계측기가 없는 경우,  
임대면적(또는 인원수) 대비 추정치 입력 및 [추가정보(증빙자료)]에 추정산식 기재

(추정산식)

건물전체 사용량 X [임대면적(또는 인원수) / 건물전체 면적(또는 인원수)]

- 건물 임대인 및 관리사무소 등에 문의



**감사합니다**